

보도시점 2024. 12. 16.(월) 11:00
12. 17.(화) 조간

배포 2024. 12. 16.(월) 09:00

반려동물 사료,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딱!

-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대한 특화 표시 기준 정립 등을 위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 (예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

둘째,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

셋째,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 (예시) 제품명 : 닭고기와 황태 →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 표시

** (예시) '돈지박' →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수지박' →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넷째,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요약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책임자	과 장	홍기욱 (044-201-2651)
		담당자	사무관	박찬우 (044-201-2656)

-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사료 기타 표시 사항에 대해 개 사료, 고양이 사료는 구분하여 별도 기준을 제시
 - 반려동물사료 품질향상 도모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신설
- 개·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 개선*
 - * 기존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단미, 배합, 보조)에 영양소 충족 여부에 따른 분류 추가
 - 영양학적 관점에서 성장 단계별 반려동물 영양소 요구량 충족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
 - * 반려동물기타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 표시 가능
-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 공통 표시사항 개선
 -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 표시 필요사항 추가
 -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인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 도입
 - * 반려동물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
- 프리믹스 표시에 대해 원료(3가지 이상) 표시 의무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병기 가능하도록 개선
 -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프리믹스 표시 의무화
 - 복합원료에 포함된 원료가 제품명에 사용 또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기 시, 원료 함량 여부(또는 비율) 표시 의무화
 - 사료공정서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으로 병기 가능(예시, 수지박 →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 소비자 오해 표시 방지 등을 위해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 기준 추가 설정

- “유기” 관련 표시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에 획득 의무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인증 기준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관련 법령* 충족 필요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비롯한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

□ 미공인 연구 인용, 효과·효능에 대한 혼동 표시·광고 등 기준 구체화

- 사료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 분야에서 미공인된 제조방법 관련 연구 등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

※ 추진 일정(안)

*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행정예고 : '25.1~2월

- 고시 개정안 확정 및 공포 : '25.5월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